

문화재의 보존철학의 발전과 보수의 윤리규범 (文化財의 保存哲學의 發展과 補修의 倫理規範)

李 泰 寧

(國際文化財保存補修로마센터 理事 및 規範委員)

目 次

緒 論	保存의 原理와 倫理規範
西歐에 있어서의 補修의 起源과 歷史意識의 擴大	保存措置의 性格과 科學的 判斷
十九世紀 補修의 敎訓과 復活主義	
保存哲學의 發展	

緒 論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유구(悠久)한 역사(歷史)를 가진 문화 민족(文化 民族)으로서 동북(東北) 아시아 문화국(文化圈)의 주역(主役)으로 구석기시대 이래(舊石器時代 以來)의 문화적 활동(文化的 活動)의 많은 발자취와 문화유산(文化遺産)인 문화재(文化財)들을 이 강토(疆土)에 남겨 놓았다. 그러나 반도(半島)라는 지정학적 조건(地政學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빈번(頻繁)히 외적(外敵)에 의한 대규모(大規模)의 침입(侵入)을 당(當)하고 병화약탈(兵火掠奪)로 인하여 석조문화재(石造文化財)와 지하(地下)에 매장(埋藏)된(主로 분묘(墳墓)) 유물(遺物)을 제외(除外)하고는 과거(過去)의 문화, 예술역량(文化, 藝術力量)에 비해 현존(現存)하는 문화재(文化財)가 영세함을 면(免)하지 못함은 實로 유감(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特)히 일제(日帝) 36년간(年間)에는 계승(繼承)되던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거의 완전(完全)한 단절(斷絶)을 강요(強要) 당(當)했고, 해방(解放)후의 혼란(混亂)과 6.25의 동란(動亂)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인적 물적(人的 物的)으로 전통문화(傳統文化)와 기능(技能)의 자원(資源)을 일소(一掃)하다시피 하였다. 해방(解放)후 36년간 역사적, 고고학적 미술(歷史的, 考古學的 美術) 및 기술사적(技術史的)으로도 중요(重要)한 유적지(遺蹟址)의 발견(發見)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굴(發掘)이 많이 있었다. 한편 최근(最近) 20年間 빈번(頻繁)한 보수공사(補修工事)와 유적지환경정리공사(遺蹟址環境整理工事)와 환경미화공사(還境美化工事)가 있었다.

이 20여년간(餘年間)은 산업, 기술, 경제, 사회구조면(産業, 技術, 經濟, 社會構造面)에서 격변기(激變期)이었으며 우리의 의식구조(意識構造)와 가치관(價値觀) 등에도 전환(轉換)을 몰아온 시기(時期)였다. 구주선진국(歐洲先進國)들이 산업혁명 이래(産業革命

以來) 오늘까지 겪어온 2세기반(世紀半)에 걸친 "변화(變化)"를 일시(一時)에 주름잡아 밝아온 눈부신 기간(期間)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역사의식(歷史意識)이 고조(高潮)되고 민족적 자부(民族的 自負)와 자아의식(自我意識)에 관심(關心)이 증대(增大)해가고 있는 이 시점(時點)에서 문화유산(文化遺産)에 대한 이해(理解)와 발상(發想), 그에 對한 보존철학(保存哲學)과 자세(姿勢)가 과연(果然) 어떠하였던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평가 반성(評價 反省)과 지침(指針)의 촉각(觸角)이 될 보존철학(保存哲學)과 보존이론, 보존윤리(保存理論, 保存倫理)와 그 발전과정(發展過程)을 살펴보고저 한다.

서구(西歐)에 있어서의 보수(補修)(Restoration)의 기원(起源)과 역사의식(歷史意識)의 확대(擴大)

서구(西歐)에서 문화재(文化財)에 對한 보수처리(補修處理)의 기법(技法)이 등장(登場)하게 된 정확(正確)한 시기(時期)를 고증(考證)하기는 어렵다.¹⁾ 그러나 구주(歐州)에 있어서 귀족예술품(貴族藝術品)들의 대규모(大規模) 컬렉션이 출현(出現)하게 된 르네상스(14~16세기)에서 바로크(Baroque, 16~18세기) 시기(時期)에 이르는 동안까지는 수집품(蒐集品)의 건전(健全)한 모양의 외관(外觀)을 유지하기 위한 손질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 당시(當時)의 보존(保存)과 손질은 대개 한 화가(書家)에게 맡겨졌고 그들의 작업(作業)이란 문화재(文化財)를 잘 수리(修理)된 상태로 항시유지(恒時維持) 시키는 일이었다. 자주 손질을 해서 잘 고쳐 놓는다는 것은 그 시대(時代)의 기호(嗜好)에 맞아서 보기 좋아짐을 뜻하게 되었고 불행(不幸)하게도 변작(變作)에 따르는 불가피(不可避)한 손상(損傷)을 초래(招來)하게 되었다. 18세기(世紀) 후반에 들어서서 골동품수집가(骨董品蒐集家)와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은 과거(過去)를 과학적(科學的)으로 조사검토(調查檢討)하기 시작(始作)하였다. Stuart와 Rivett는 1964년에 그리스의 Athens 고적(古蹟)을 실사(實寫)하였고 Adams형제(兄弟)는 1777년에 현재(現在)는 유고슬라비아의 땅인 스플리트(split)에 있는 디오클레티아(Diocletian)의 궁전(宮殿)을 실측(實測)하였다. 나포레온은 이집트 원정(遠征)때 유명(有名)한 학자(學者)들의 대부대(大部隊)를 거느리고 가서 이집트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를 유적(遺蹟)과 유품(遺品)을 통(通)해 조사(調査)하여 과거(過去)에 對한 많은 지식(知識)을 안고 왔고 그들의 견문(見聞)은 나포레온의 프랑스 제국(帝國)과 기타 구주 각국 예술양식(歐州 各國 藝術樣式)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세기초(世紀初)까지 구주(歐州)에는 현대적 국가(現代的 國家)가 때를 같이하여 발전(發展)함에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는 마치 국토내(國土內)의 강산(江山)이나 계곡(溪谷)과 같이 국민(國民)의 성격(性格)을 형성(形成)하고 사회조직(社會組織) 및 안녕(安寧)과 밀착(密着)된 목숨과 같은 귀중(貴重)한 국가적 보물(國家的 寶物)로써 중요시(重要視)되기 시작(始作)하였다. Violet-le-Due(1817~1819)²⁾는 그의 조국(祖國)인 프랑스 영내(領內)의 역사적 기념물(歷史的 紀念物)에 對하여 누구보다도 앞서서 조직적 복원공사(組織的 復元工事)를 시도(試圖)한 선구자(先驅者)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1) 油畫에 關해서는 1360년 이탈리아의 시에나(Siena)에서 클린잉을 한 記錄이 있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普遍化되고 있다.

자주 임의(任意)로 구조물(構造物)의 첨가(添加)와 모양(模樣)을 바꾸는 손질을 해서 원형(原形)을 변형(變形) 또는 위작(僞作)으로 만드는 범실(凡失)을 했다. 따라서 그가 행한 손질의 총결산(總決算)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것이 되어 유적기념물(遺蹟紀念物)이 과거(過去)로부터의 진짜 전갈을 간직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 Viollet-le-Due의 보수 방법은 과학적(科學的), 고고학적(考古學的)인 방법(方法)과 애국주의적(愛國主義的) "부활(復活)" 主義가 뒤섞인 사고방법(思考方法)에서 유래(由來)된 유명(有名)한 예(例)로서 이러한 실책(失策)은 오늘날 소위(所謂) 비오레 르 드 이론(理論)²⁾으로 불려지고 있다.

十九世紀 “보수(補修)”의 교훈(敎訓)과 부활주의(復活主義)

현대적 보존방법(現代的 保存方法)에 있어 그 진수(眞髓)가 되는 여러 철학(哲學)과 원칙(原則)을 분명(分明)하게 제창(提唱)한 최초(最初)의 인사중(人士中)에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1834~1896)를 들 수 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시대(女王時代)의 영국(英國)의 예술가(藝術家)이며, 장인(匠人)이기도 하며, 시인(時人) 겸 문학평론가(文學評論家), 그리고 정치가(政治家)이기도 했다. 당시(當時)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중요(重要)한 예술유산(藝術遺産)들이 단장式의 보수(補修)로 초래(招來)되는 파괴적점사(破壞的結果) 때문에 받는 손실(損失)을 크게 우려(憂慮)하였다. 그는 보존(保存)을 이해 못하는 문외한(門外漢)들의 건축협회(建築協會)에 호소하기를 "옛 기념탑(紀念塔) 위의 시계(時計)를 그대로 놔 두어라. 바람과 기후(氣候)로부터 보호하는것 이상(以上)의 수단(手段)을 쓰는 어떠한 보수에 대해서도 항거(抗拒)하라. 그리고 우리 고대건축물(古代建築物)이 단순히 교회(教會)의 완구(玩具)가 아니라 국민(國民)의 번영(繁榮)과 희망(希望)의 성(聖)스러운 기념물(紀念物)임을 각성케하라"고 외치었다. 1877년에 존 러스킨(John Ruskin)과 길버트 스코트(Sir Gilbert Scott)의 격려(激勵)와 협조(協助)를 받아 모리스는 고대건물(古代建物)의 보호운동(保護運動)을 위한 사회단체(社會團體)를 설립(設立)하였다.¹⁴⁾ 이것은 오늘날 數많은 지방단체, 국가규모(地方團體, 國家規模)나 전세계(全世界)의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에 관심(關心)을 가진 국제적 기구(國際的 機構)(ICCROM, UNESCO, ICOM, ICOMOS, IIC)나 연구교육기관(研究教育機關)들의 선구(先驅)가 되는 운동(運動)이라 하겠다. 이상(以上)에서 논(論)한 바와 같이 서구(西歐)에 있어서 유적(遺蹟) 등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보수(補修)(Restoration) 사업(事業)이 전개(展開)되기 시작(始作)하게 된 것은 이렇게 18세기말경(世紀末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⁵⁾이 시기(時期)는 바로 현대적 역사의식(現代的 歷史意識)이 성숙(性熟)되던 때에 해당한다. Restoration이라는 술어(術語)는 넓은 뜻으로는 보존(保存)(Conservation 또는 Preservation)과 같은 뜻이지만 협의(狹意)로는 과거(過去)의 문화적 소산(文化的 所産)을 현존(現存)하는 진품(眞品)으로서 생생하게 감상, 접촉(鑑賞, 接觸)할 수 있게끔 유지(維持)하기 위한 현대적 방법(現代的 方法)이란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¹⁾ 산업혁명(産業革命)의 발발과 역사적 양심(歷史的 良心)의 발전(發展)이 그 당시(當時)까지 연면(連綿)히 흘러오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생활(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生活)의 전통(傳統)의 맥(脈)을 끊게 되었다. 實로 이 시점(時點)으로부터 과거(過去)는 동 떨어진 무대(舞臺)에서 펼쳐진 한막(幕) 지나간 파노라마같이 간주(看做)되어졌다. 단절(斷絶)된 생활(生活)의 전통(傳統)에 집착(執着)하는 代身 객관적(客觀的) 과학적인 새 수법

(手法) 즉 고고학(考古學)에 의한 과거(過去)의 조명(照明)이 성행(盛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純粹)하게 과학적(科學的)으로 얻어진 고고학적 지식(考古學的 知識)도 전통(傳統)에 의해서 보장(保障)되어 왔었으나 이미 끊어진 전통(傳統)의 맥락(脈絡)을 이어줄 힘은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법(接近方法) 즉 고고학적 방법(考古學的 方法)에 이어서 반성적(反動的)으로 나타난 새 사조(思潮)는 과거에 대한 낭만적 향수(浪漫的 鄉愁)였다.¹⁾ 이것은 역사주의(歷史主義)와 애국적 국수주의(愛國的 國粹主義)가 함께 복합(複合)된 형태(形態)의 것이었다. 이로 인(因)해 소위(所謂) 부활주의, 복고풍조(復活主義, 復古風潮)를 낳게 되었다.

과학적(科學的)인 고고학적 방법(考古學的 方法)의 시도(試圖)와 애국(愛國), 향토애(鄉土愛)를 표방한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부활복고조(復活復古調)"는 앞서 언급(言及)한 Viollet-le-Duc 이론(理論)²⁾에서, 또한 19세기에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복원작업(復元作業)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착(密着)된 소산(所産)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양식(樣式)의 복원(復元)은 유럽에서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근자(近者)에 독립(獨立)한 대부분(大部分)의 신생국(新生國)에서 현대판(現代版) 국수주의(國粹主義)가 이러한 치명적 과오(致命的 過誤)의 전철(前轍)을 밟으며 재판(再版)을 연출(演出)하는 풍조(風潮)를 보이고 있음에 식자(識者)¹⁵⁾들과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에 관여(關與)하는 국제기구(國際機構)들은 크게 우려(憂慮)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과학적 접근(科學的 接近)은 모든 나라의 국경(國境)을 초월(超越)해서 문화재(文化財)는 인류공동(人類共同)의 문화적 유산(文化的 遺産)의 한 부분(部分)이라는 개념(概念)을 형성(形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遺産)과의 산 접촉(接觸)은 부활적 재건(復活的 再建)이나 복원(復元)으로서는 도저(到底)히 실현(實現)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과거(過去)의 스타일에 몸 담겨진 상징적 가치(象徴的 價値)를 겨냥한 재건(再建)으로서는 실현(實現)될 성질(性質)의 것도 아니다.

오직 진짜 과거의 창조물(創造物)인 문화유산 자체(文化遺産 自體)가 지닌 독자성(獨自性), 유일성(唯一性)을 인정(認定)하는 접근법(接近法)에서만 과거(過去)와의 접촉(接觸)이 실현(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보존철학(保存哲學)의 발전(發展)

앞서 모리스로 하여금 고대건물보호운동단체(古代建物保護運動團體)를 만드는 데 큰 구실을 한 존 리스킨은 일찌기 (1849)다음과 같이 설파(設破)하였다.³⁾

"소위 Restoration이라는 것은 가장 나쁜 파괴행위(破壞行爲)이다. (그는 Restoration의 개념(概念)을 부활주의(復活主義)에 의해 행(行)해지는 재건(再建) - 전체(全體)나 部分的이나 막론(幕論)하고 - 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건축물(建築物)의 총체적 파괴(總體的 破壞)를 뜻한다. 이러한 파괴로부터 나머지의 어떤 것도 다시 모여질 수는 없다. 이것은 파괴된 문화재(文化財)로 하여금 그릇된 상(象)을 안겨주게 되는 따위의 파괴 행동이다. 죽은 자(者)를 회생(回生)시킬 수 없듯이 건축물(建築物)에 있어서도 그것이 간직했던 위대성(偉大性)이나 아름다움을 회생(回生)할 수는 없다. 작업(作業)한 공인(工人)의 눈과 손으로 심어진 정신(精神)이 다시 부활(復活)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각기 시간적(時間的)으로 다른 때에는 다른 정신(精神)이 심어진다. 따라서 복원(復元)한 건축물(建築物)은 새로운 건축물(建築物)이 될 것이다. 죽은 장인(匠人)

들의 정신(精神)이 다시 소생될 수는 없다. 이 시대적으로 다른 정신은 또 다른 손으로 하여금 다른 기법(技法), 다른 아이디어가 깃들게끔 다른 계시(啓示)를 할 것이다." 발달(發達)된 현대(現代)의 미학이론(美學理論), 역사비판(歷史批判)의 원리(原理)와 언어학(言語學) 이론(理論)은 이 리스킨에 의해서 표현(表現)된 진실(眞實)을 지지(支持)해 주고 있다.¹⁵⁾ 각 예술작품(藝術作品), 장식(裝飾)의 각 조각들 각 역사적 참고자료(歷史的 參考資料)들은 본질적(本質的)으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하며 위조물(僞造物)이 아니고서야 재현(再現)될 수 없는 성질(性質)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죽은 언어(言語)와 같다. 우리는 오늘날 라틴語나 산스크리트語에 對해서 잘 알며 이해(理解)할 수는 있지만 더이상 그 언어(言語)들을 사용(使用)해서 말할 수는 없다. 비록 그러한 말들을 한다고 해도 진짜 표현(表現)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過去)의 참 목소리는 보호(保護)에 의해서 보존된 것에서만 들을 수 있다. 한편 전통적 수공예(傳統的 手工藝)의 기능(技能)의 명맥(命脈)이 유지(維持)되고 있는 경우,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이 오도(誤導)될 우려(憂慮)가 있다. 기능자(技能者)를 통(通)해 전승(傳承)된 것 中 今日的 산업세계(產業世界)에서 살아 남은것은 오로지 기술 자체(技術 自體) 뿐이며, 이것은 보수기술상(補修技術上) 틀림없이 쓸모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事實上) 진정한(眞正)한 과거(過去)의 표현(表現)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現財)의 표현(表現)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모리스시대(時代) 이후(以後)로 보존(保存)의 본질적원칙(本質的 原則)과 목적(目的)이 대폭적(大幅的)으로 변(變)했다기 보다는 정성껏 다듬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지구상(地球上)에 있는 문화재(文化財)는 다시 새로 만들 수 없는 자원(資源)이며 각 문화재(文化財)나 건물(建物)은 이들의 창조자(創造者)로부터의 특별(特別)한 전갈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구조(原構造)와 원 모양은 변형(變形)되던가 위조(僞造)될 수 없으며 우리 인류공동(人類共同)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인 이들을 보존(保全)하기 위해서 국적(國籍)에 관계(關係)없이 모든 사람은 보존(保存)을 도울 의무(義務)와 책임(責任)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보존(保全)의 기본원칙(基本原則)과 철학중(哲學中) 중요(重要)한 골자(骨子)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원형(文化財 原形)에 對한 가미(加味)나 위조개작(僞造改作)의 흠이 없이 보수(補修)를 하는 방법(方法)의 모색(模索)이 오늘날에 있어서 보존(保存)의 핵심문제(核心問題)가 되며 재래(在來)의 전통기능(傳統技能)을 가진 기능 계승자(技能 繼承者)와 보수(補修)를 주무(主務)할 보존전문가(保存專門家)와의 근본적 차이점(根本的 差異點)도 바로 여기에 있다.¹⁴⁾

보존(保存)의 원리(原理)와 윤리규범(倫理規範)

부란디(Brandi)는 그의 보존이론의 원리(保存理論의 原理) "Teoria del Restauro" 중 에서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Restora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하고 있다.⁴⁾ 즉 "보수(補修)는 문화재(文化財)를 후세(後世)에 전달(傳達)하는 것을 염두(念頭)에 두고 문화재(文化財)가 지니고 있는 물질 형태(物質 形態)와 미적 역사적 이중성격(美的 歷史的 二重性格)을 고려(考慮)하면서 적절(適切)한 좋은 방법(方法)을 알아보는 일이다."

그는 이 정의(定義)로부터 보수, 더 일반적(一般的)으로 보존 (preservation, preventive restoration)에 있어서 고려(考慮)해야될 제일중요(第一重要)한 面은 문화재(文化財)의 구상(具象)으로서의 물질(物質)의 형태(形態)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보수의 길잡이가 될 제일원칙(第一原則)은 보수해야 될 문화재(文化財)의 재질(材質)에만 국한(局限)되어야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미지를 전달(傳達)하는 유형(有形)의 수단(手段)은 그 재료물질(材料物質)로부터 별개(別個)로 분리(分離)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질(材質)과 이미지는 공존(共存)하며 뒤섞여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유형적 수단(有形的 手段)인 몸체가 바로 이미지의 내존적가치(內存的價值)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물체(物體)의 어떤 부분(部分)은 건물(建物)의 기초(基礎)나 서화(書畫)의 종이나 천같이 지지물(支持物)의 구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만일(萬一) 문화재(文化財)의 상태(狀態)에 보존상(保存上) 이 유형(有形)의 수단(手段)의 일부(一部)를 희생(犧牲), 혹은 대체(代替)가 필요불가피(必要不可避)할때라 할지라도 그 실시(實施)에 임(臨)해서는 미적요구(美的要求)에 따라서 수행(遂行)되어야 되나 역사적요구(歷史的要求)도 물론(勿論) 고려(考慮)할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또한 작품(作品)의 창작당시(創作當時)뿐만 아니라 제작(製作)된 이후(以後)의 흘러간 역사(歷史)의 자국도 또한 고려(考慮)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수라는 특수(特殊)한 술어(述語)는 이들 서로 상반(相反)되는 요구(要求)에 대처(對處)하는 적응성(適應性)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보수의 제이원칙(第二原則)은 미술적위조(美術的偽造) 또는 역사적가식(歷史的假飾)을 범(犯)함이 없이 그리고 시간(時間)이 흐른 발자취를 지워버리는 일 없이 문화재(文化財)가 간직하는 통일체(統一體)로서 조화(調和)를 재수립(再樹立)하는 것이 보수의 목적(目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제일원칙(第一原則)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문화재(文化財)의 유형적 재질(有形的 材質)에만 보수의 손이 미쳐야만 된다면 재질(材質)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구현(具現)시키기 위해 필요(必要)한 것이 문화재(文化財)의 재질(材質)이라고 정의(定義)를 할 필요(必要)가 있다. 여기 구조물(構造物)의 재질(材質)과 외관(外觀)을 나타내게 하는 재질구분(材質區分)이 있게 된다. 벽화(壁畫)나 그림이 그려진 벽면(壁面)종이 캔버스 등은 회화(繪畫)를 지지(支持)하는 구조적(構造的)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이미지를 구현(具現)시키는 재질(材質)인 회화(繪畫) 자체(自體)보다는 중요성(重要性)이 적다는 해석(解釋)이다. 따라서 노후(老朽)된 캔바스를 새것으로 교체(交替)하고 벽화(壁畫)를 전이(轉移)하는 보수(補修) 합리화(合理化)의 논거(論據)가 되기도 한다.

문화재 보존(文化財 保存)을 위한 보수를 계획 준비(計劃 準備)하고 운용(運用)함에 있어서 규범(規範)이 될 보수 원리(原理)가 철학(哲學) 미학(美學) 역사비판론(歷史批判論) 그리고 기술적(技術的) 뒷받침을 받고 오늘날 넓게 인정(認定)되고 있는 원리(原理)로 진보 세련(進歩 洗練)되기까지는 2세기반(世紀半) 이상(以上)의 세월(歲月)이 걸렸다. 문화재 보존(文化財 保存)에 대한 지대(至大)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國際機構)인 UNESCO^{10) 11) 12) 16) 17) 18)} 국제문화재보존보수(國際文化財保存補修) 로마 센터 ICCROM¹⁵⁾ 보존전문가 단체(保存專門家 團體)인 IIC⁹⁾(Institute of International Conservation) 및 ICOM^{6) 7) 8)}에서는 여러차례 총회(總會)에서 보존철학(保存哲學), 보존윤리(保存倫理) 또는 보수 규범(補修 規範) 등을 제정 채택(制定 採擇)하여 각국(各國)에 그 이행(履行)을 권고(勸告)하고 있다.

보수 규범(補修 規範)은 표현(表現)과 세목(細目)에 있어서는 차이(差異)가 있으나 대략(大略)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할 수 있다.

1. 보수 대상물(補修 對象物)은 필(必)히 손질하기 전(前)의 상태(狀態)에 대(對)해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을 작성(作成)하고 보수절차(補修節次)와 처리방법(處理方法)의

구체적(具體的) 기록(記錄)은 勿論 사용(使用)한 재료(材料)에 관(關)한 가급적(可及的) 자세한 기록(記錄)을 남긴다.

2. 역사적 증거물(歷史的 證據物)은 모두 기록(記錄)을 하여 놓고 파손(破損)시키거나 개형(改形 偽造)함은 물론 일편(一片)이라도 제거(除去)해 버리는 일이 없게 한다.
3. 여하(如何)한 손질에 있어서도 최소한도(最小限度)에 머물 것. 그리고 손질은 필요 불가결(必要 不可缺)함이 정당화(正當化)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4. 모든 손질은 미적 역사적(美的 歷史的) 및 외형 보전(外形 保全)의 원칙(原則)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방법(補修方法)에 있어서 지켜야 될 사항(事項)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가역적(可逆的)인 방법(方法)을 택(擇)할 것. 기술적(技術的)으로 허용(許容)되는 한(限)에서 필요(必要)할 때는 언제나 보수전 원상(補修前 原狀)으로 환원(還元)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2) 필요(必要)할 때에는 언제나 다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장차 보수(將次 補修)에 불편(不便)을 남기는 것이 되지 않게 한다.

3) 문화재(文化財)에 간직된 모든 증거(證據)역사적(歷史的), 미술적(美術的), 기술사적(技術史的) 등등에 對해서 後에도 접근연구(接近研究)할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을 배제(排除)하지 않게 한다.

4) 현존(現存)하는 물질(物質)은 최대한도(最大限度)로 보존(保存)한다.

5) 손질이 필요(必要)할 때라도 색(色), 색조(色調), 결, 외관(外觀)과 짜임새 등이 조화(調和)되도록 하되 원재질(原材質) 보다 돋보이지 않게 꾸미는 한편 고친 자리를 쉽게 식별(識別)할 수 있게 한다.

6) 적절(適切)한 자문(諮問)을 받지 않는 한(限) 불충분(不充分)한 훈련(訓練) 또는 경험(經驗)을 쌓은 보수자에 의해서 보수처리(補修處理)가 수행(遂行)됨이 없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問題)에 따라서는 독특(獨特)해서 참고(參考)로 할 선례(先例)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행착오방법(試行錯誤方法)에 입각(立脚)하고 제일원리(第一原理)에 충실(忠實)하면서 해결(解決)을 모색한다.

보존조치(保存措置)의 성격(性格)과 과학적 판단(科學的 判斷)

문화재(文化財)에 對한 간섭(干涉)은 실질적(實質的)으로 언제나 그 "가치(價値)"를 크든 작든 감퇴(減退)시킴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未來)까지 오래도록 보존(保存)하기 위해 취(取)해지는 조치(措置)라는 뜻에서만 정당화(正當化)될 수 있다. 보존조치(保存措置)는 규모(規模)에 있어서나 강도(強度)에 있어서나 크고 작은 여러수준(水準)의 간섭(干涉)을 하게 된다. 그 정도(程度)의 차(差)는 처치(處置)를 받는 문화재(文化財)의 물리적 조건(物理的 條件), 손상(損傷)의 원인(原因) 그리고 그가 장차(將次) 놓여질 환경(環境)에 따라서 결정(決定) 된다

개개(個個)의 경우마다 대개 모든 요인(要因)을 고려(考慮)하면서 개별적(個別的)으로 고려(考慮)치 않으면 안된다.

항상(恒常) 종국(終局)의 목적(目的)과 보존(保存)의 원리(原理)와 규범(規範)을 명심(銘心)하면서 지금하고자 하는 작업(作業)이 다음 7범주중(範疇中)에서 어떤 것에 해당 하는가를 명확(明確)히 한다.

그러나 어떤 개개(個個)의 보수처리(補修處理)에 있어서 취(取)한 조치가 7개의 범주중(範疇中)의 하나에만 속(屬)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全 보수 과정(補修過程)의 여러 국부적 부분(局部的部分)에서 몇가지 범주(範疇)의 것이 동시(同時)에 필요(必要)하게 되고 원칙적(原則的)으로 (라)項까지가 보존개념(保存概念)에 속(屬)하는 소위 보수조치(補修措置)라고 할 수 있다.

이 7가지 범주(範疇)는 다음과 같다¹⁴⁾

악화예방조치(惡化豫防措置)(prevention of deterioration)

보존(保存)(Preservation)

보강(補強)(Consolidation)

보수(補修)(Restoration)

복제(複製)(Reproduction)

중건(重建) 또는 복원(復元)(Reconstruction)

재평가(再評價)(Revaluation)

여기서 사용(使用)한 용어(用語)는 협의(狹義)의 것으로 지금껏 술(述)해온 "Conservation"의 넓은 의미(意味)로의 "보존(保存)",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보존(保存)을 목적(目的)으로 한 인간(人間)의 간섭(干涉)의 뜻으로 써온 Restoration에 대응(對應)시킨 "보수(補修)"와는 다르다.

필자(筆者)는 지금껏 현재(現在) 우리나라에서 관용(慣用)되고 있는 "보존(保存)" "보수(補修)"를 논술(論述)에 사용(使用)해 왔으나 우리는 여기에 이르러 이들 개념(概念)이 간직하는 뜻과 문자자구(文字字句)의 일반적 뜻 사이에 차이(差異)가 있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문자(文字) 그대로의 뜻은 보존의 철학(哲學)과 원리(原理)를 크게 곡해(曲解)시킬 우려(憂慮)가 있다.

Conservation은 보존(保存)보다 "보전(保全)"이 Restoration은 "보수(補修)"나 理致에 맞게 손질하는 "수리(修理)"가 더 많은 물체의 보침(補添) 간섭(干涉)을 함축(含蓄)하는 "보수(補修)"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물(建築物), 선사시대(先史時代)의 유적(遺蹟), 옥외기념물(屋外紀念物), 옥내(屋內)의 미술품(美術品) 또는 장식예술품(裝飾藝術品)들 각양 각색(各樣 各色)의 문화재(文化財)들을 보존(保存)하는 문제(問題)는 단순(單純)한 일이 아니다. 대상(對象)이 다양(多樣)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처(處)해 있는 환경(環境) 또한 다채(多彩)롭다. 개개(個個)의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도 물론 색색(色色)이다. 오랜 세월(歲月)을 사람과 자연(自然)에 시달린 대부분(大部分)의 문화재(文化財)는 풍화(風化), 부후(腐朽), 부식(腐蝕) 등 악화손상(惡化損傷)을 받고 있다. 공해(公害)에 의한 환경오염(環境汚染)의 심화(甚化)는 과거(過去) 보다도 악화속도(惡化速度)를 훨씬 가속(加速)시키고 있다.

"예방(豫防)은 최선(最善)의 치료(治療)" "한 코의 바늘이 아홉 코의 바느질품을 아낀다"는 서양(西洋)의 격언(格言)과 같이 수리(修理)를 생각함에 앞서서 예방대책(豫防對策)에 우선(優先)을 두어야 되겠다. 예방(豫防)은 손상원인(損傷原因)을 이해(理解)하여야만 그 대책(對策)이 수립(樹立)될 수 있다. 피상적 원인(皮相的 原因)에 관(關)한 지식(知識)이 아니라 구체적 악화(具體的 惡化) 메카니즘의 구명(究明)과 파악(把握)이 요구(要求)된다. 예방대책(豫防對策)이나 수리대책(修理對策)도 정량적(定量的)인 과학적 현상 파악(科學的 現況把握)이 선행(先行)된 객관적 평가(客觀的 評價)를 거쳐서만 수립(樹立)될 수 있다. 경시적 변화(經視的 變化)의 측정평가(測定評價)에 의해서만 손질의 필

요성(必要性)과 적절(適切)한 時期가 판단(判斷)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절차(節次)는 바로 과학적 수단(科學的 手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어떠한 장기적 보전정책(長期的 保全政策)이던간에 손상(損傷)된 물건(物件)을 수리(修理)하는것 보다는 손상원인(損傷原因)과 투쟁(鬪爭)하는 데 더욱 관심(關心)을 둘 필요(必要)가 있다.

일찌기 드브라크(Max Dvorak)¹⁹가 갈파했듯이 문화재(文化財)의 파괴손상(破壞損傷)의 주원인(主原因)은 인간의 행위(行爲)임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인위적파괴(人爲的破壞)에 대해서는 식자간(識者間)의 우려(憂慮)는 물론(勿論)이고 UNESCO나 ICCROM, IIC 등 여러 국제기구(國際機構)나 국제모임에서 누차 우려(憂慮)를 표명(表明)하고 주의(注意)를 환기(喚起)시키고 있다.

인위적 파괴(人爲的 破壞)는 대략(大略)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된다.¹⁵⁾

1. 무지(無知)와 문화적 관심(文化的 關心)의 결핍(缺乏)에서 오는 무관심(無關心)과 방임(放任)
2. 이데올로기의 이유로 인한 의도적 방임(意圖的 放任) 또는 파괴(破壞)
3. 경제적 고려(經濟的 考慮)나 교통상 이유(交通上 理由)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政策)에서 오는 파괴(破壞)나 이전(移轉)에 따르는 가치훼손(價值毀損)
4.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원인(原因)으로 하여금 유래(由來)되는 위조재건(偽造再建)이나

재건(再建) 또는 복원(復元)

(1) 실제(實際)로 있던 과거(過去) 역사경험(歷史經驗)을 부활(復活)해 본다는 낭만적 착각(浪漫的 錯覺)

(2) 명맥(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기술(傳統技術)이 역사적 무대(歷史的 舞臺)가 변한 오늘날 진정한(眞正)한 전통적 가치(傳統的 價值)를 표현(表現)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錯覺)

(3) 고고학적 지식(考古學的 知識)과 실지(實地)의 유적지(遺蹟址)와 혼동시(混同視)하는 경우

(4) 상징적 목적(象徴的 目的), 이데올로기의 목적(目的) 또는 관광자원개발 목적(觀光資源開發 目的)을 위해 시행(施行)되는 유적물(遺跡物)의 난굴(亂掘)

(5) 반다리즘(Vandalism)에서 오는 목적(目的) 없는 자학적 파괴(自虐的 破壞)

우리 문화재(文化財)에 대해서 혹시 이상(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理由)로서 인위적(人爲的)인 문화재 파괴(文化財 破壞)가 진행되었고 현재(現在)도 진행(進行)되고 있지 않은가 냉철(冷徹)하게 살피고 반성(反省)할 시점(時點)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事實) 우리는 문화유산(文化遺産)의 최후(最後)의 상속자(相續者)가 아니라 과도적 관리자(過渡的 管理者)의 입장에서 보존(保存)에 만전(萬全)을 기(期)해야 될것이다. 엄격(嚴格)한 평가자(評價者)는 더 세련된 문화적 혜안(文化的 慧眼)과 더 앞선 기술(技術)을 지니고 문화유산(文化遺産)의 상속(相續)을 하게 될 우리 후손(後孫)과 문화재(文化財)를 인류공동(人類共同)의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계(世界)의 교양(教養)있는 지식인(知識人)들이라는 것을 염두(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引用文献〉

- 1) Ceschi, Carlo: *Teoria e Storia del Restauro*, Mario Bulzoni ed; Rome 1970
- 2) Viollet-le-Duc, Eugène: *Dictionnaire raisonné d'Architecture*, F. De Nobele, Paris, Verbe Restauration
- 3) Ruskin, Joh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1849, Chapter VI Aforism 31
- 4) Brandi, Cesare: *Theoria del Restauro* Torino: Einaudi, 1977
- 5) Conti, Alessandro: *Storia del Restauro della Conservazione delle Opere d'Arte*, Florence, Electa Editrice, 1974
- 6) ICOM: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Handbook of National Legislation Comp. by Bonnie Burnham. Tunis, Ceres Productions, ICOM, 1974
- 7) ICOM: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South-east Asia* ICOM Meeting of Experts, Malacca, Malaysia, 12-13 December, 1972. New Delhi, ICOM Regional Agency in Asia, 1975
- 8) ICOM: *Ethique des Acquisitions/Ethics of Acquisitions*. Paris, ICOM, 1971
- 9) IIC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American Group. *The Murray Pease Report. Code of Ethics for Art Conservations*. New York, IIC, American Group, 1968
- 10) UNESCO: *Sauver Venise*, Paris, Robert Laffont, 1971
- 11) UNESC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Paris, UNESCO, 1968
- 12) UNESCO: *La Conservation et la restauration des monuments et des batiments historiques*. Paris, UNESCO, 1973.
- 13) Urbani, G: *Problemi di Conservazione*, Rome, Editrice Compositori, 1978
- 14) Feilden, B.M.: *An Introduction to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Paris, UNESCO, 1979
- 15) Philippot, P: *Restoration: Philosophy, Criteria, Guidelines*, ICCROM, Rome. 1972
- 16)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 and Site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12th session*, Paris, 11 December, 1962.
- 17)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ional heritage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17th Session*, Paris, 16 November 1972
- 18)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 of historic areas,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19th Session*, Nairobi, 26, November, 1976
- 19) Dvorak, Max : *Katechismus der Denkmalpflege* Vienna, 1918